

정보보호 관련 법의 과제와 합리적인 개선방향

이 영 수*

요 약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고도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시간·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다. 정보가 자원인 사회구조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혁명을 일으켰고, 인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반면 동시에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역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관건은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발전시키고 역기능을 적절히 규제 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으로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및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구조 및 개념에 대한 문제와 현 사회에 부적절한 법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Securing Information Related Lawful Problems and it's Rationalities of Remedy

Young Su Lee*

ABSTRACT

The improvement of an information communicating technology provides mankind with a rationality of ancient technology, and gave us many benefits as they go beyond time and place. a society that requires information, improving information communicating technology had a revolution over us and is giving us good benefits.

The improvement os an information communicating technology gave us benefits for sure. in the other hand, it is giving us a threat also. important point in a growth of a knowledge information community is to search for a way to make positive function work better and to reduce the bad benefits.

They discussed some ways that information society is blocking the growth of a knowledge information community, and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get a step closer to solve these problems.

* 경기대학교 컴퓨터보안학과

1. 서 론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초고속 통신망의 급증으로 정보의 흐름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이 확산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컴퓨터의 침해 행위를 컴퓨터 범죄라 하였는데, 최근에는 독립된 컴퓨터 자체에 대한 범죄의 범주를 넘어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공간(Cyber Space)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를 포괄하는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새롭게 탄생하였으며,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정보화 형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는 1995년 12월 부분 개정된 형법과 정보보호 등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형사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 등이 있다.

국내 정보화는 정보화 기반의 확충에만 중점을 두고 발전하여 정보화의 순기능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역기능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보보호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연구, 개발이 많은 부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측면인 정보보호 관련 법에서는 문제점 인식 및 대응방안 연구가 미흡하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에 능동적이고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법률의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고찰하여 정보보호 관련 법의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형사법규의 한계와 개선방안

형사법(형법 및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

부조항 법규 중 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법령 제정과정에서 생기는 시차문제,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법률의 통일성 결여, 정보통신 시설 관리자의 사고예방조치 의무화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2.1.1 입법 과정에서 생기는 시차문제

현행 입법체계는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을 제정, 공포·시행까지 보통 2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구조 및 범죄형태는 1990년대 이후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모든 사회구조가 Off-Line과 On-Line이 혼재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공간 개념이 기존 사회구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오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은 내일이면 옛것으로 변화되고 만다. 시시각각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신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의 범죄구조 또한 빠른 변화속도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입법체제로 법령을 제정하여 사이버범죄에 대응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밖에 없다. 사이버공간이라는 사회구조로 변화되면서 역기능 또한 기존사회구조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던 개념으로 급변하고, 지식정보사회의 사이버범죄 또한 정보화 기술발전의 추이에 따라 양상이 변모하는 동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기존 입법체제로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2.1.2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문제

정보통신 관련 특별법들은 각각의 행정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계되는 사항만을 법제화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동일한 사항이라도 각각의 용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며, 제제규정 및 처벌규정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법제화 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보

통신 관련법률은 위와 같이 개별법률로서, 다양화 되어 있는 정보지식사회에 일면 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부분적인 입법으로 정보사회의 제반현상에 통합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동일현상에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하는 형사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가벌성의 범주를 체계적으로 구체화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규제법령의 수는 많아도 실질적으로 중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허점이 생기거나, 법률 상호간의 처벌내용에 대한 모순과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동일한 행위가 여러 곳에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처벌법규의 체계적인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가 되고 있다.

2002년 12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으로 일원화하여 지식정보 사회의 발전과 역기능인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2.1.3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 의무화 제도적 필요성

오늘날 사이버범죄의 핵심적인 형태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 1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단순 침해만 일어난 경우에 대하여 침해여부를 구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로 위 법규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보통신망의 단순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서비스 제공자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안정성장치에 투자가 미비하며, 침해행위의 근거인 통신망접속기록(log)을 남기

지 않거나,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접속기록을 보관하여 실제로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효율적인 단순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보호할 의무를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사후진압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동법 제 45조 제 1항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의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보호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의 침해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정보통신망 관리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일체 부과되지 않고 있다(제 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고시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킹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관리자에게 정보통신망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해킹의 발생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침해는 그 연결성이 강화 될수록 이에 비례하여 더욱 파괴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목적의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제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2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한 법적 규제의 한계

2.2.1 정보보호 법률의 해석론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의 내용도 처벌규

정의 신설이나 확장에 국한 할 수는 없다. 정보화 기술의 비약적이고 지속적인 발달은 범죄의 양상을 낱알이 변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5년 개정을 통해 형법전에 새로이 규정된 범죄유형은 이미 1980년대 컴퓨터 범죄 유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규제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 많다. 또한 최근의 사이버 관련범죄의 유형이 형법상의 전통적인 범죄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는 더이상 특수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특수한 대응을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과도기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사이버범죄의 일반화를 개념적으로 실현하여 기존 범규정 전반에 걸쳐 사이버공간의 마인드를 해석론으로 실현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형사법의 과제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신설만으로서 해결되리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될 것이며, 정보통신 관련 분야 및 법조인, 관련 학자, 입법관련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날로 발전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시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입법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2.2 범규상 정보의 재물성

지식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오늘날 많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자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유되는 현실에서 이는 곧 재산상의 침해로 직결되므로 정보를 범죄의 객체로 하는 행위들에 대해 재산범죄의 성립을 배제한다면 커다란 문제이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정보는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성을 가지지 못한다). 물론 정보라는 재화가 점유의 이전을 통해 가치가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다른 재화와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식정보 사회에서 무한한 자산가

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도용 문제를 재산적인 침해로 보지 않는다면 처벌의 커다란 흠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보를 기존의 재물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입법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제도적 장치인 법률은 언제나 범죄의 뒤를 따라 다니고, 새로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공백상태를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물의 개념을 관리 가능한 동력에 국한하지 말고, 재산적인 가치를 관리 가능한 재화라는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적인 규제의 내용도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새로운 처벌이라는 국지적인 대응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가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론적, 해석론적인 해결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 및 아이템, 케릭 등은 재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 사회 구조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 아이템, 케릭 등이 현금으로 유통되며, 이에 대한 시장 규모 또한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문 게이머(프로 게이머), 게임의 사이버머니, 아이템 관련 전문 직업인 등 온라인 게임관련 직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생성 및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업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 범죄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 발표한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2002년말 기준 총 발생범죄 60,068건에 게임관련 범죄 32,743건으로 54.8%가 게임관련 범죄이며, 해킹 범죄의 62.7%(해킹범죄 14,159건 중 게임계정 해킹 8,878건), 사이버범죄의 52%(45,909건 중 게임사기 관련 23,865건)를 차지하고 있다. 즉 200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의 절반이 게임관련 범죄라는 것이다. 여기에 미신고 범죄(게임 관련

범죄가 대부분 학생들 층에서 주로 이루어나는 범죄로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미신고 한 것과 피해가 소액으로 미신고)까지 추정한다면 실제 게임 관련 사이버범죄는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추정한다.

〈표 1〉 2002년 게임관련 범죄발생 현황

구 분	범죄발생	해 킹	일반사이버범죄
총 범죄	60,068	14,159	48,909
게임관련범죄	32,743	8,878	23,865
비율(%)	54.8	62.7	52

2.2.3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의 보호문제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정보통신망법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법정대리인은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철회권을 갖는다(제 31조).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일본의 15세 이하, 미국의 13세 미만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규정은 그 시대상황 및 인지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형사법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전혀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의 형사 미성년에 대한 시각차이는 클 수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변화하듯이 관련 법규도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식정보 사회는 다양화된 사회이다. 단순히 위 정보통신망법 제 31조에서와 같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준을 세부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관된 개인정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의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방법 등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

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 또는 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 한다(제 42조). 여기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 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 선정된 것을 말하는데 위 사항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된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인터넷 사이트라는 매체물을 청소년위원회에서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고시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 절차상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유해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에 존재하는 정보 중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나 사이트 등은 사이버공간의 구조상 행정조치(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유해매체물로 심사를 하여 고시)하기 전에 변동되기 쉬운 즉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폐쇄하였다가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를 계속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 규제하는 방안은 현행 절차법으로는 근본적인 규제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전혀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 하여도 위법한 사이트가 아니라면(예 성인 사이트, 성인물 사이트 등) 사이트 초기화면에 19세 미만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와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대부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만들어 놓으면 법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성인 인증이라는 것이 사이버상 인증으로 실제 누구나 성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도용하여 사용한다면 청소년이라도 쉽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또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사이버공간 특성상 타인명의 도용시 접속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는데 문제점이 있다. 위 규제 법안이 제정된 목적은 청소년들의 접속을 제한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청소년을 위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규로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식적인 법률제도는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이므로 사이버공간의 현실을 직시, 현실에 부합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와 기술적 방안을 함께 연구·개발할 수 있는 법률을 신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모든 국민의 전자인증제를 두어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인 방안을 논의하되 개인정보 침해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개인정보 보안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한 전자인증제를 도입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전자정보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철저한 보완장치를 한 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서비스 운영자를 규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시기이다.

또한 선진국 등에서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아동포르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부 선진국에서 규제하지 않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규제(제 65조 제 1항 제 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 하거나 공연히 전시한자-1년(1천만원)이하 징역)법규는 존재하고 있으나, 아동포르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형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등에관한법률 등에서 청소년이나 아동(13세 미만)에 관한 성희롱, 성폭행, 음행매개 등에 대하여만 가중처벌법

규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이버상 유통되고 있는 아동포르노 영상물 등은 청소년들에게 아동의 성폭행 범죄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아동 성 관련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물을 제작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의 형사법에서도 아동포르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2.2.4 개인정보 분쟁의 사법의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수집과 이용 및 처리에 관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주소자원 확충 업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 통신망에서 청소년 보호의무, 통신망안전성 유지 등의 업무를 위해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제 53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범위반의 국제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제 54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침해의 우려와 수단 및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관련된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개인정보보호원(privacy commissioner, data register)을 설립하여 분쟁의 조정과 중재 등을 이용하여 대다수 사건을 당사자간의 화해나 타협에 의해서 해결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신기술 개발에 따른 침해유형의 다양화와 법규범의 지연으로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을 가능한 자제하는 입장이다.

우리도 법원에 의한 재판과정이 2차의 정보공개 내지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자적자치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중재나 조

정의 절차의 도입을 명시하고(제 52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제도적으로 강제력 행사 권한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고 합의권고 또는 당사자간 조정만 할 수 있다. 즉 분쟁이나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없어 실제적인 조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당사자간 자료제출 등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조정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3 정보보호 관련법 개선방안

2.3.1 법률의 제도적 개선방안

첫째, 국제적 질서에 호환적이고 능동적·가변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사회의 급변하는 정보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정보보호가 필수조건이다. 정보보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역기능인 사이버범죄 또한 급속히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의 특징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범죄 행위를 감안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규와 필요시 관련법규를 신설·개정하여 발전하는 범죄현상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규제형식은 현재 산재하여 존재하는 법규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과 충돌, 모순의 불합리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련행위에 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의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법규가 국제적 질서에 호환될 수 있는 융통성과 가변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형사법의 중요한 원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으

므로 양자의 조화문제는 향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둘째, 현행 처벌법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 구조에 정보통신관련 법률이 실질적인 정보화의 역기능인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제도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기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절차와 같이 까다롭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륙법계 법률이 아닌 영·미국의 배심원제도와 같은 법률제도와 대륙법계의 법률이 혼합된 준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정보보호 관련법률과 같이 개별법률로 산재하여 제정·시행되며, 용어, 제제규정, 처벌조항 등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사회를 저해하는 역기능인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부적절한 법률구조를 형사법상 동일성의 원칙에 의거 동일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 급변하는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련 법률 재정비 하여 특별법을 통일하여 단일법률로 일원화하는 법률구조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모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현행 시행법령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재정비하여 단일법률로 입법화 하여야 한다.

셋째, 사이버범죄 예비행위 규제법률의 신설이 필요하다.

사이버범죄를 예방·진압하는 법규에서는 비가시적인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위험원을 예상한 위험 형사법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위험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가장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사이버범죄(단순 해킹 등)는 독자적인 가벌성이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곧 단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즉 기존의 법익침해 개념 속에는 침해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행위의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러스의 전파(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의 제작과 같은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해킹을 조장하거나 해킹의 기법을 통신망이나, 서적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예비행위의 처벌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범죄의 진압보다는 예방이 사회보전차원에서 경제적이다.

넷째, 초고속 네트워크망 및 공중망의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 부분에서 기술하였듯이 국내 정보화사회의 인프라 중 초고속 인터넷 망의 발달은 초고속 성장을 하여 2002년 현재 1,040만 가구를 초과 하였으며, 세계 제1의 초고속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순기능 측면에서 보면 초고속 인터넷 망의 확장이 우리 사회를 세계 제1의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으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만든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성급히 정보화 인프라의 확장정책에만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생겨난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큰 부작용은 정보화의 역기능인 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것과 정보보호 관련 해킹에 대비한 추적수사를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해킹 등 사이버범죄 발생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및 추적수사의 근간이 되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Log)의 보관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수사불능인 경우가 많고, 또한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산 정책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지역사업을 하고 가정의 대부분은 이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 인터넷망에는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아 범죄 발생시 추적이 불가능하다.

세계최고의 인터넷 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창하고 있는 PC방이 지식정보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역기능인 사

이버범죄의 산실이 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기초 지식 조차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며,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공간으로 존재하여 사이버범죄의 온상으로 변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모든 교육기관의 도서관 및 공공장소인 역사, 터미널,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 인터넷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는 구축되었는데 이에 대한 역기능을 규제 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진정한 정보화 강국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지역 인터넷 망과 PC방 등 공중 인터넷망에서의 사용자를 추적 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는 모든 인터넷 망은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접속기록의 보관을 의무화 하고, PC방 이용자 추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자주민카드 등의 시행으로 사용자 기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여 진정한 지식정보사회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3.2 정보보호 제도적 개선방안

첫째, 새로운 체계의 수사기관의 필요성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는 그 특성상 광역화, 피해자의 불특정화, 익명성 등이 보장되는 즉 시간과 공간개념을 극복하는 범죄인만큼 사법기관 혼자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불가능한 범죄로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 관련기관의 연계활동과 국제적 공조, 정보통신 관련 민간기업의 협조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입법을 통해 국제적 사법공조에 관한 별도의 법적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범죄의 구성과 증거수집(압수수색 권한 및

절차)에 관한 새로운 원칙과 재판권 및 관할권에 관한 원칙들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새로운 편성 즉 국제적 감각에 맞으며 국제적인 수사기관(현행 인터폴은 수사공조기구일 뿐 실제로 수사권한은 없음)을 설립하고, 국내적으로도 검·경만의 수사가 아닌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새로운 합동수사 기관의 설립에 대하여도 논의 할 때라 생각한다.

둘째, 국가 기관의 정보화 관련 부처의 재편이 필요하다.

현행 국가기관 부처의 정보화 관련 업무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발전 시켜고, 이로 인하여 제반 규정 및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 각 개별 법규에 별도로 지정되어 때로는 처벌형량 등에서 다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같은 특별법이라고 하여도 각 부처마다 기득권을 장악하고자 관련 세부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정보통신망법을 재정비하고, 또한 부처별로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모든 업무 권한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구분할 것은 구분하여 관련 부처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관장하려고 하다보니 공통 같은 존재가 되어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특히 정보화의 순기능 측면에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 역기능 부분에는 미흡하게 대처하여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보보호라는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법률 정책적인 기능 등 세부 사항은 관련부처로 업무를 이관하고, 복합

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 부처간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정부조직을 만들고, 각 부처 및 기관에 맞는 형태로 업무를 재편성하여 능동적이고 동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정보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법제화가 필요하다.

처벌규정이 존재한다고 항상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며 범죄가 예방 및 진압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범죄를 처벌하고 싶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즉 증거가 없다면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의 원칙상 처벌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하여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진압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따라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보안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사이버범죄 중 해킹 및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암호체계와 암호화기법에 대한 개발을 통해 보호조치를 파괴하는 범죄자보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컴퓨터 해킹에 대한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방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청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도청에 대한 감지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웹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한 연구 및 네트워크 기술개발로 인한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보호 관련 보안 기술 등을 역기능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률 즉 규제법이 아닌 정보보호 진흥법률로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인 인식전환 및 홍보가 필요하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측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인 비대면, 익명성, 기·공간의 제약 극복, 정보의 집약 및 정보전달의 신속성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연령층이 낮고, 범죄의식이 희박하며 범죄시간 및 장소 개념을 바꾸어놓았으며, 정보집약 및 전달의 신속성으로 인하여 쉽

게 범행도구가 확산 될 수 있다. 특히 해커들의 경우 그 범행동기가 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자신의 지식수준을 자랑하려는 잘못된 영웅심의 발로이거나 단순한 유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시스템의 조작기술을 즐긴다는 의도 속에 전통적인 범죄에서와 같은 도의적인 자책감이 결여되기 쉽다. 또한 해킹의 기법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버젓이 존재하고, 서점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해킹 기술이 없는 사람도 쉽게 해킹을 할 수 있으며, 워 바이러스를 제작 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국가 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인식전환을 시키고, 또한 처음 컴퓨터나 인터넷을 대하는 교육기관(학원 포함)등에서는 사용방법 등 기술적인 교육 이전에 사이버윤리교육을 먼저 실시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 사이버윤리의식을 확립시켜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규범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4 사법기관 과제 및 개선방안

2.4.1 우수한 수사인력 확보

현행 정보통신망 침해사범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으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사이버수사대)와 검찰청 인터넷범죄 수사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1995년경부터 적극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치안활동에 나서 1995년 해커수사대, 1997년 컴퓨터범죄 수사대, 1999년 사이버범죄 수사대를 거쳐 2000년에는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지방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경찰서 수사 2계 사이버범죄 수사전담요원)를 창설하는 등 사이버공간의 사이버 치안환경 변화에 민완하게 대처해오고 있으며, 검찰청은 대검찰청에 1999년 4월에 '컴퓨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2000년에 중앙수사부내 '컴퓨터수사과', 2001년에 대검찰청 인터넷범죄 수

사센터(서울지검 인터넷범죄 수사센터, 5개 지검에 컴퓨터수사반)를 설치 운영하며, 실제적인 사이버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수사요원 구성은 고전범죄를 수사하던 일반수사관들이었으며, 정보기술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사이버수사요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일부 인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경찰청을 제외한 일선경찰서에서는 아직 대부분 일반 수사요원들이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고 있어 전문적인 정보기술문제 발생시 수사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채용한 정보기술 전문가 또한 수사에는 아직 익숙치 못하여 서로간의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정보화 기술은 급속한 변화를 하고 있으며, 기술 또한 광범위한 반면, 일선 수사관의 수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대응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수사기관과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에 사이버범죄 수사대, 정보보호센터 등에 컴퓨터 관련범죄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이버마인드와 법적인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수사관의 확보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양성 즉 법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이버마인드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전문 수사요원의 확보 및 일반수사요원을 사이버전문교육을 통하여 사이버수사요원으로 전환하고, 기존 사이버수사요원 또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정보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이버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사이버범죄 전문수사요원으로 확보, 정보화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2.4.2 정보접근권 인정의 제도적 필요성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침해는 증가하지만 이를 추적하고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사고의 대부분이 추적불능이나, 해결불능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침해사범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준다든지, 또는 피해당사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운영자 등에게 수사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의무를 모든 정보통신망 관리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가 극도로 확산된 오늘날 해킹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의 차원을 넘어 세계 지배 무기화 할 수 있는 가공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사이버범죄는 단순한 사이버범죄가 아닌 국가와 국가, 민족분쟁, 종교분쟁 등 각종 사이버테러 형태로 발전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오늘날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근본적·체계적이며, 통일적인 규제법의 보완·수정 및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압수, 수색, 전자추적의 절차, 전자적 증거자료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 수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배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3 추적수사의 배려

익명성이 강하고 지능적인 해커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전자적인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절차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해커의 추적이 실제로 5%도 안 되는 현실에서는 처벌법규의 존재가 아무런 보완 장치가 되지 못한다. 특히 정보통신망에서 해커의 추적수사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피해기관의 수사협조의무와 같은 것을 규정하여 해커의 추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일반 고

전범죄에서도 범죄 수사시 범행 관련 증거보존이나 증거수집이 중요하지만,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추적수사 및 증거확보는 필수이다. 사이버범죄의 추적은 고전범죄(Off-Line 범죄)와는 다른 각도에서의 추적이 필요하다. 즉 현행 절차법인 영장(압수수색, 감청)을 통한 추적수사는 한계가 있는 수사이므로 특별히 사이버 수사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사 할 수 있도록 긴급체포장과 같은 긴급압수수색 영장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개인의 인권침해의 발생소지가 있음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배려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

2.4.4 국제협력 수사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망법 제53조에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사이버범죄 국제적인 무대로 자행되는 국제적인 범죄이다. 전반부에서 서술하였듯이 사이버범죄는 시간·공간을 초월하는 범죄로서, 범죄의 기본구성 요건중 가장 중요한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자행되는 범죄이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행위는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을 경유하여 범행이 자행되고 있다. 물론 현재에도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을 위하여 인터폴(Interpol)이라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인터폴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수사협력만 하는 기구이므로 범행 발생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는 즉시성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사이버범죄에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수사 기구의 존

제가 필요하다. 물론 이 기구는 정보화 법률, 사이버범죄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사이버범죄를 추적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간 수사 협력시 조약·규약 및 상호주의 등에 입각한 국제협력수사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3. 결 론

과학 문명의 발달 즉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구조가 급속히 변모하고 있으며, 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사회 기능의 마비도 일어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명품이라는 정보 시스템과 정보통신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도 마찬가지다.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반면 범죄자들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정보형사법 또한 사이버세계를 살아가는 21세기형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형사법의 임무는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원리에 충실해야 했던 기존의 형사법의 기능을 넘어서 지식정보사회의 순기능을 보장해 주고 역기능에 능동적이고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원리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확산과 통신망의 연결로 제기된 사이버범죄는 나날이 그 모습이 변모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침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국한하여 대중적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규의 보장적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또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와 함께 새로운 위협원으로 등장하는 일련의 사회적 위험을 방치하는 것도 법규의 본질적인 임무 중의 하나인 보호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위협원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의 가벌성의 확장이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침해하는 새로운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더욱 위험한 일이 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가벌성의 범주가 확장 되더라도 법규의 보장적 기능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배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사이버 공간은 전통적인 법률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로부터 지적재산권법과 통상법 분야를 거쳐 세법과 소비자보호법, 형법, 헌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이버 공간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전통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법역이 관련되는 분야나 법역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해석이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하는 법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향후 발전방향은,

첫째, 지식정보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가 필수조건이고, 정보보호는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장치인 법률로서의 보호가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정보사회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이고, 또한 변화에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법역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전통적 법학 관점의 범규범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역의 법률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사회의 순기능을 발전시키고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범규로의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보호를 지원하는 범규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새로운 영역은 이

제 생성단계를 넘어 발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식정보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화 법률 역시 발전단계로 급속한 정보사회의 변화 속에 역기능 또한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즉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적시성이 있는 동적인 법률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셋째,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본질적으로 사이버공간에 존재하는 법률이다.

사이버공간이 시간·공간을 초월하는 즉 광역성, 국제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국제적·개방적 마인드로 우리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형성되어야 하며, 전통법률적 사고가 아닌 지식정보사회의 사이버 세상에 맞는 사이버 법률적 사고로 통용되는 법률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법규의 동일성을 위하여 통일된 정보보호 법규로 발전한다.

현행 법률중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특별법으로 너무 많은 법규로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같은 통일된 법규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구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규칙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안문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박영사, 2001,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법과 제도”,

법제논단, 2003. 1.

[2] 양근원,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2001.

[3] 김성준, “인터넷법률의 형성과 전망”, 인터넷법률, 창간호, 2000. 2.

[4] 유인모, “정보형법의 과제와 전망”,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논문.

[5] 전지연, “컴퓨터과피에 대한 형법적 검토”, 형사정책, 제8호, 1996.

[6] 정영화,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개인정보보호법률(Privacy Act)의 실현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논문.

[7]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

[8] 통계청, <http://www.nso.go.kr/>.

[9]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10] 대검찰청 인터넷범죄 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11]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사이트, www.ctrc.go.kr.

[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사이트, KISA. www.kisa.or.kr.

[13] 한국전산원 정보화 통계 DB 시스템, <http://stat.nca.or.kr>.

[14]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nic.or.kr>, 인터넷통계, KRNIC, <http://isis.nic.or.kr/>.



이 영 수

2003 경기대학교 컴퓨터보안학
(석사)

1999년~2003년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